

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2. 10.

제천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2. 11.

다. 상 정 일 자 : 2009. 2. 16.(제15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문수)

가. 재안사유

-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,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·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, 전자송달납부자,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함(안 제2조)
 - 대상자 선정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, 전자송달납부자는 직전년도 연간 납부건수를 참작하여 선정하고,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, 체납유무,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(안 제4조)
 -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자, 전자송달납부자는 세금징수 등 소요비용 만큼 실비로 지급하고,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, 지방세 징수유예,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, 성

실납세자 표창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조)

- 매년 1월달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(안 제6조)
-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지원을 하고, 그 명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함(안 제7조)
-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·시행하도록 함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완식)

【 법적 검토 】

-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제정)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
-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다.

【 행정적 검토 】

- 이 조례안은 자동이체 납부자 및 전자송달 납부자,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자등 세무행정 시책에 적극 참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징수비용절감액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징세비용 절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조례안 제5조의 자동이체 납부자와 전자납부 송달자에 대한 실비지원에 따른 소요예산과 지원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건별 송달 및 징수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부 기준이 필요할 것임

나아가 이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현재 낮은 수준의 자동이체 납부자 비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임

4. 질의답변 요지(답변자 : 세정과장 박문수)

- 지방세 납부액이 매년 법인은 1천만원, 개인은 3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?(양순경의원)

: 개인은 납세의무자란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되는 납세의무자를 말함.
- 타시의 조례를 보면 법인은 2천만원, 개인은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하였는데, 법인은 1천만원, 개인을 3백만원 이상 납부한 기준은 무엇인지?(양순경의원)

: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 우리시의 경우 법인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또 규모도 작을 뿐더러 법인수도 작음. 그래서 법인은 하향조정을 하고 개인은 최근 3년 동안에 300만원임.
- 조례안 제5조에 자동이체 납부자와 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실비지원에 따른 소요예산과 지원방법은?(조덕희의원, 성명중의원)

: 저희가 연간 대상되는 건수가 한 22만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자동이체 납부를 하고 있는게 1%임.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비용을 하면 올해 12월 기준으로 하면 건당 한 664원 정도 발생함. 10%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하게 될 경우에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사이에 연간 소요예산 액이 됨. 예를 들어서 1천원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자동이체할 때 사용하였던 계좌로 그 금액만큼을 되돌려주는 자동이체방식으로 거기에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이 있음.

5. 소수의견

“없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